

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

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, 제6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「천연뜨란채아파트」의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7. 24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1. 지정번호 : 제2024-002호
2. 공동주택명 : 천연뜨란채아파트 (15개동)
3. 소재지 :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45
4. 지정범위 : 지하주차장
5. 금연구역지정 시행일 : 2024. 7. 24.
6. 홍보 및 계도기간 : 2024. 7. 24. ~ 2024. 10. 23. (3개월)
7. 금연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: 2024. 10. 24. ~ (과태료 5만원)
※ 「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」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금연환경관리팀 (☎ 02-330-866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